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457 호

이 조례(안)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6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시행규칙 중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,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 변경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자치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
- 자치회관 프로그램 총 운영 시간 제한 규정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553, FAX : 3396-8613, E-mail : ahromin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(안)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프로그램 운영 등) ⑧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,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, 비대면 (온라인)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2항 중 “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은 월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” 를 “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제4조(프로그램 운영 등) ⑧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,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, 비대면 (온라인)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p>
<p>② 강의시간은 자치회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<u>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은 월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	<p>② ----- ----- <u>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